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3-23호**  
**2023. 5. 4.(목)**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공 고(3)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515호) ..... 1
-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고(2차)(공고 제2023-520호) ..... 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528호) ..... 13

###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509호) .....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510호) .....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519호) ..... 3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523호) ..... 46

### 행정예고(1)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3-508호) ..... 52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515호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5. 4. ~ 2023. 5. 18.(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석봉로58번길 74 (석봉동) / 해성식당 (강○순)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해성식당(사업자등록 폐업일 2022. 12. 24.)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고(2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 근로자 등 근무여건 개선 및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5. 29. ~ 6. 9.(12일간)
2. 접수장소 :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42-608-4162)
3. 지원사업 : 2개사업 / 공동체 활성화 분야(1개사업) 및 주거안전 분야(1개사업)
  - 가.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
  - 나.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분야별 사업개요
  -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입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시설(공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 사업예산 : 42,000천원 /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액 : 단지별 8,4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 범위 보조금 지원)
    - 지원단지 : 5개소
  - 나.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 보수
- 사업예산 : 13,000천원 /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액 : 단지별 6,5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 범위 보조금 지원)
- 지원단지 : 2개소

#### 5.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 · 시급성 ·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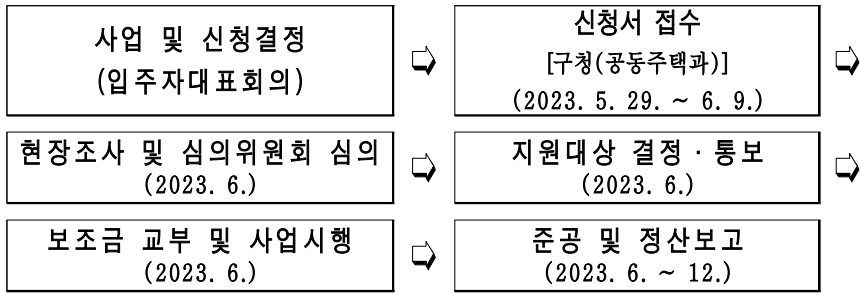
#### 6. 제출서류

- 가. 분야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1~2]
  -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나.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공동체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사업위치 도면 및 사진(신청 당시) 첨부다. 신청단지 일반현황 1부 [서식3]
- 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연혁(최근 3년 관리규약준칙 반영) 1부.
- 마.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 바.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제출 (조달청가격 및 물가정보 참고)
  - ※ 단가조사 어려운 공사는 견적제출 가능(견적은 3개 업체이상 비교 견적)
- 사.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4]

#### 7. 지원결정 취소 사항

- 가.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 나.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계획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선정된 경우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라. 사업계획서 상 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마.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공모사업 지원절차 (예정 흐름도)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함.

10.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사업계획서는 서식2 참고하여 3매 이내로 1부 제출 (평가기관 요구시 추가 제출)
  - 다.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6월 이내 공사 착공(시행)
  - 라.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 마. 지원사업으로 보수·설치된 시설은 대전광역시 지원받은 시설임을 표시
- ※ 사업문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042-608-4162~3)

- 붙임 1. 분야별 지원사업신청서 각 1부(서식1-1~2).  
 2. 사업계획서(서식2).  
 3.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서식3).  
 4.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 끝.

[서식1-1]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명	전 화		
		FAX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업유형	신설( ) / 개·보수(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2.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목적		
	사업내용 (시설개요)	○ 시설위치(장소),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등 공동체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개요 기재 - 대상인원 : 공동체시설 운영자(공동체활동화 단체) 및 시설 이용자 - 주용내용 : 공간활용 등 : 당초(○○○로 사용) ⇒ 변경(○○○로 사용) ※ 신설인 경우 면적 및 구조 기재,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3. . . ~ 2023.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보조금, 자부담 합계)	자부담	천원( %)
실무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p>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b>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b>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b></p> <p>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p>				

[서식1-2]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 원 사 업	사업유형	전체( ), 일부(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3. 00. 00.	
	단지 내 교통사고발생	유( ), 무(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유/무	· 출입구 : 개소 · 통과도로 : M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주요 설치시설 및 위치 - 주요시설 : 안전표지(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반사경등 - 설치위치 : ※ 단지내 도로 사고 현황(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도서(단지 배치도 및 도로현황, 지하주차장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3. . . ~ 2023. .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보조금, 자부담 합계)		자부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 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b>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b>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2]

2023년 공동주택 ○○○ ○○○ 지원사업 계획서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사업 추진계획 ※ 사업별 해당서식(1~8번) 선택

1.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b>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b>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b>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b>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업량

4. 세부추진계획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구체적 추진사업 내용	추진시기
.	.	8월
.	.	9월
.	.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조금 (신청액)	원( %)	자부담	원(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 신청단지별 해당되는 분야만 선택 기재 / 항목별 총액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출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b>총    계</b>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 사 비	소 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 사 비	소 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 가급적 각 지출 항목별로 보조금 시비 : 자부담 비율 유지, 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제외

⇒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면적(m²)×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 산출 기초 및 근거 첨부 / 전적서(2개업체 이상) 또는 단가조사서 등 산출내역서, 과다 산정시 선정 배제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수입금액	비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3]

## 공동주택 일반 현황

###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 / 중상( ), 경상(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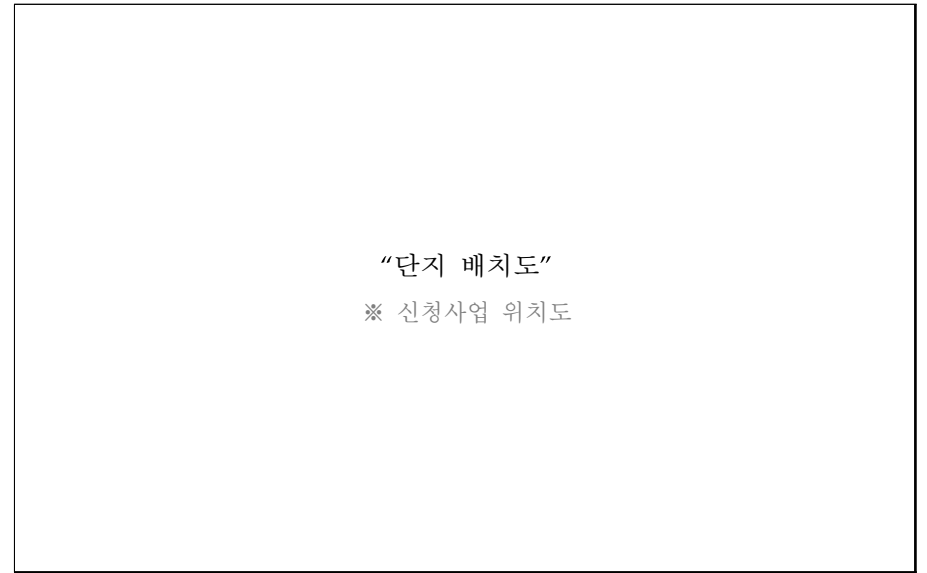
###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2년도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20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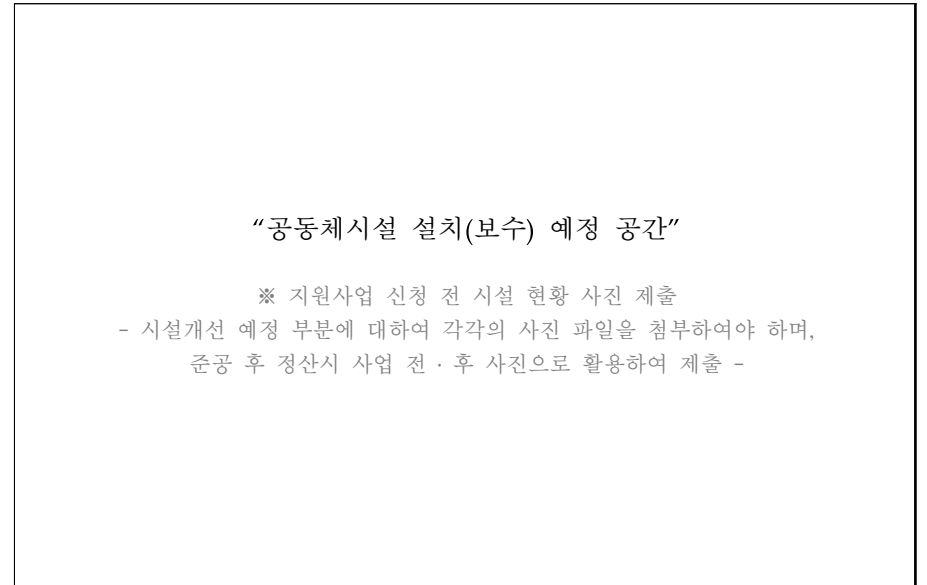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계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 단지 배치도 / 지원사업 위치도



### □ 사업 시행전 사진 (신설 및 보수)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_\_\_\_\_년 \_\_\_\_월 \_\_\_\_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 연락처 : 042)608-5382, 모사전송(FAX) 042)608-384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이경민(전화 : 042-608-604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 제명을 정비함(안 3조제1항).
    - 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7조 제2항 및 제5항).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5, FAX : 042-608-3811,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④ (생략)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신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제안의 공동제출,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화 및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안업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제안의 모집,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그 외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5, FAX : 042-608-3811,

E-mail : rudals4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이경민(전화 : 042-608-6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

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 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제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하되, 필요시 관련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및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위원회의 실시성과 평가를 거쳐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인센티브의 부여)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국외연수 또는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부상금
2. 은상: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부상금
3. 동상: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의 부상금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탁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0조(실비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안주무부서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한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 등급은 실시 결과의 행정 개선도에 따라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신청서			
① 제목			
② 동일·유사제안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_____, 제출일시: _____)		
③ 주제안자 (기여도: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 공동제안자 (기여도: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⑤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 ] 전자우편(이메일) [ ] 우편		
<p align="center"><b>&lt;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gt;</b></p> <p>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제안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b>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제안사업 관리</b></p> <p><b>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b></p> <p><b>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b></p>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b>동의</b> <input type="checkbox"/> <b>미동의</b> <input type="checkbox"/></p>			
_____년 _____월 _____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안 내 용**

⑦ 현황과 문제점

⑧ 개선방안

⑨ 기대효과

[작성 요령]

-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② 동일·유사제안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 ③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④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채택제안 실시계획 및 성과평가서

제안제목						
실시부서명				담당자(직급)		
제안종류				채택일		
실시일정	<input type="checkbox"/> 실시예정일 : <input type="checkbox"/> 최초실시일 :					
<b>분기별 추진계획 및 추진경과</b>	연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	추진계획	·	·	·	·
		추진경과	·	·	·	·
	년	추진계획	·	·	·	·
		추진경과	·	·	·	·
	년	추진계획	·	·	·	·
		추진경과	·	·	·	·
	년	추진계획	·	·	·	·
		추진경과	·	·	·	·
	년	추진계획	·	·	·	·
		추진경과	·	·	·	·
	실시성과 평가	실시내용			행정개선효과	
작성자	○○과장: ○○○ ☎608-0000    ○○팀장: ○○○ ☎0000    담당: ○○○ ☎0000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에 관한 시책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집적지구 기반시설 위탁 및 지원, 사용료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전화 : 042-608-6482, FAX : 042-608-3831,  
E-mail : eunguri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전화 : 042-608-64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

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운영, 사후관리에 대해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절차에 대해 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구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설치)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소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소공인 관련 단체, 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대학교수·지역경제 및 소공인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성과관리 평가의 확대에 따라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불부합한 인용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10조).
  - 나. 인용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263, FAX : 042-608-3811,  
E-mail : mission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송은실(전화 : 042-608-6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15명 이내의 위원-----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관계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목 적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성능개선으로 잦은 고장 및 서버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위치를 이전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2. 사업개요

- 가. 사업대상 : 고정형 단속카메라(CCTV) / 5개소(붙임 참고)
- 나. 사업내용 : 단속카메라, 영상소프트웨어 등 교체 및 이전설치

3. 공고기간 : 2023. 5. 4. ~ 5. 24. (21일간)

####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3년 5월 24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교통과 주차관리팀
- 팩스 : 042-608-3845

라. 기타문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 주차관리팀(☎042-608-5283)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붙임1】 성능개선 대상 위치도 및 사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4-2 [송촌동 주민센터사거리]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57-1 [송촌동 TG]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1-31 [화정초등학교]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96-3 [중리남로 하나로쪽]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0-1 [해피존] / **이전설치**



[붙임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성능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성능개선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